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1569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론 종결 2019. 11. 8.

판결 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9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9.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가.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E 이하 '피보험자'라 하겠습니다.)와 그의 소유의 F K3(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며, 소외 G 은 피보험자의 시어머니로서, 무보험상해담보상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나. 피고 1 C 은 H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의 운전자로서, 본 사고의 가해당사자이고, 피고 2 D 은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입니다.

2.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본 건 사고는 2016 년 12 월 26 일 10:00 분경 제주도 제주시 I 센타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1 C 은 피고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지점을 우회전 주행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G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우측면으로 피해자 G 을 충격하여 두개골 골절 및 골반 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따라서, 본사건 사고는 피고 1 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들은 본 사고의 피해자 G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보상금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취득

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본건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동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피보험자는 원고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동약관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피보험자의 요청상 2019. 3. 22 까지 금 142,790,790 원을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가료 중)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

원고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나면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법 제 682 조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다. 구상범위

본 사고경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피고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측의 책임보험가입사인 J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한도인 금 30,000,000 원에 대해 환입하였기에,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금원은 금 112,790,790 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라. 청구유보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G 은 중상해자로서, 장기 치료가 요하는 자이고, 향후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바, 추가로 지급될 보상금에 대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보합니다.

4. 결 론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의청구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불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의 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